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 개정내용 검토결과

1. 진행경과

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1)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반입관리실 반입관리팀장 면담('11.8.18)

2)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이사 및 매립관리실장 면담('11.8.23)

3) 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반입체계 개선 조합 건의서 제출('11.8.23)

4)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조합을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고발조치 계획 통보 ('11.9.19)

나. 환경부

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 팀장 1차 면담('11.8.23) / 2차 면담('11.10.06)

2) 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반입금지 관련 조합 건의서 제출('11.10.06)

다. 2011년도 수도권매립지 국정감사

❍ 국회환경노동위원회('11.9.2 ~ 10.6)

※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가연성폐기물 반입관리의 실태 및 문제"

⇒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요구

라. 언론보도

1) '소각 대신 불법 매립' ('11.3.21 / KBS)

2) 폐기물 처리업체들, '불법 매립의 유혹' ('11.7.23 / KBS, MBC)

3) 소각비용 아끼려 '불법 적재함 바꿔치기' ('11.9.24 / MBC)

4) 마곡지구 8900세대 건축폐기물 가스와 악취에 신음 ('11.9.22 / 조선일보)

5) 소각용 폐목재 잘게 자르는 '비빔밥 수법'으로 버젓이 매립장 行('11.10.19 / 문화일보)

2. 매립지 개정내용 대비 조합 요구안 반영 및 문제점

구 분	조합 요구안	수도권매립지 개정내용	문 제 점
1. 가연성폐기물 반입 비율(30%)	-가연성폐기물 반입 가능 비율을 5%이하로 조정 -생활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반입 기준 신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기준 강화>** -'12.1.1일부터 일반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연성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반입 전면 금지(하수준설토, 도로조명폐토사 등 일부 불연성 허용) **<5톤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기준 강화>** -'12.1.1일부터 건설폐기물 차량으로 반입하는 모든 폐기물('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포함)에 대해서 전자인계서 확인 의무화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강화>** -중량비로 가연성 폐기물 5% 초과시 가연성 가산금 부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의 건설폐기물 위장반입 검사방법 필요
2. 표준중량제도	-가연성폐기물 반입가능비율에 맞추어 현행 70% 이상에서 90%이상으로 강화	-현행 표준중량을 평균중량으로 변경하고 반입가능 중량을 평균중량의 80%이상으로 조정	
3. 폐기물 반입 검사 시스템	-정밀검사 대상차량 랜덤지정 방식 채택 및 폐기물 차량검사시 현장 CCTV 설치	**<건설폐기물 '가연성분리선별장치'>** -가연성폐기물 불법 반입 차량을 랜덤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폐기물 전량을 분석	-1일 검사차량 선정대수 지정
4. 반입 수수료 폐기물 성상별 차등적용	-정당하게 반입하는 업체에게는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주고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지 수명 연장과 폐기물 반입의 투명성 배가	-건설폐기물 '가연성분리선별장치'의 시료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가산부과액 부과조치 {건설폐기물반입수수료단가×6×반입량×(가연성중량포함비율-5%)}	
5. 폐기물 하역 현장 CCTV 설치로 매립과정 인터넷 공개	-매립 폐기물 하역 장소 내 CCTV 설치 -CCTV 확인 시 외부단체 공동 입회를 통한 하역 폐기물 분석		<국정감사 요구사항> -공사 홈페이지 CCTV 실시간 열람 미반영
6. 매립현장 외부 인력 공동 입회	-시민단체와 가연성폐기물의 수요처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검사		-미반영
7. 반입기준 위반 행위 배출처 통보	위반업체가 배출처와 소각처리비용으로 계약을 하고 불법 매립하여 차액을 착복함에 따라 동 사례를 배출처에도 통보		-미반영

3. 세부 개정내용

가. 가연성폐기물 반입기준 개선

❍ 주요개정내용(관련규정 : **제10조 별표5 개정, '11.10.31일 시행**)

구 분	현 행	개 선
용 어	표준중량	**평균중량**
정의	차량별 최대총중량에서 최소공차중량을 차감한 실중량의 최대값	**차량별 평균실중량과 평균공차중량을 합산한 값**
적용대상	사업장생활계(하수준설토 제외)폐기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폐기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소량배출자가 많아 제외하고 별도 강화조치)**
산정기준	최근 6개월 실 데이터로 산정하고 매분기별로 갱신	**평균실중량과 평균공차중량은 최근 1년간('10.10.1~'11.9.30)의 실데이터로 산정하고 각각 합산하여 반영**
반입기준	표준중량의 70%이상 반입가능	**평균중량의 80%이상 반입가능**

나.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전확인

❍ 주요개정내용(관련규정 : **제10조 별표5 신설, '12.1.1일 시행**)

구 분	현 행	개 선
주요내용	'5톤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으로 반입시 전자인계서 없이 반입 가능함. 또한 생활폐기물차량으로도 운전석 옆에 적색 깃발 부착하고 반입이 가능	**'5톤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으로 반입시 전자인계서 없이는 반입불가** **단, 동폐기물을 생활폐기물차량으로는 전자인계서없이 반입 가능함.(공사규정상 생활폐기물차량 운전석 옆에 적색 깃발 부착하고 반입토록 조치)**

다. 가연성폐기물 시료채취 검사

❍ 주요개선계획('12.1.1일 제1단계 시행)

구 분	현 행	개 선
검사방법	일반하역검사 및 정밀검사	일반하역검사 및 정밀검사, 분석검사 병행
대상폐기물	모든 매립폐기물(탈리액, 고형화오니, 연탄재 제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폐기물
선정기준	일반하역검사(모든 매립폐기물), 정밀검사(정밀검사 선정기준)	건설폐기물 및 중간처리잔재폐기물 중 선정기준은 별도 내부방침으로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예정
제재기준	위반내용별 벌점부과 및 반출조치	시료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가산부과액 부과조치 - 산출공식 : {건설폐기물반입수수료단가×6×반입량×(가연성중량포함비율-5%)} * '6'은 소각단가 대비 매립단가 환산계수임. * '5%'는 건폐법에 의한 혼합건설폐기물의 가연성 중량제한 기준이며, 물질별 체적환산계수적용시 30% 부피비는 중량기준은 약5%에 해당 예) 반입량 15톤 차량의 시료분석결과 가연성중량 포함비율이 12%인 경우 가연성가산부과액=29,630원×6×15톤×(12%-5%)≒186,670원
전제조건	현장 검사인력에 의존	- 시범운영 : '가연성분리선별장치'에 의한 전량분석으로 물성별 분리방법 적용('11.10~12월 운영예정) - 1~3단계운영 : '선별기계장치 도입·운영 ※ 해당설비 통합계량대 고도화사업에 반영 검토

라. 토요반입제 폐지

❍ 주요개정내용

1) 폐기물반입시간(**관련규정 : 제4조 별표2 개정, '12.1.1일 시행**)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시간	대상	시간	대상	
월요일 ~ 금요일	06:00~16: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06:00~16: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개 시 시 간 조 정
	07:00~16:00	건설, 사업장일반	06:30~16:00	건설폐기물	
	08:00~16:00	고형화오니	07:00~16:00	사업장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	
	09:00~16:00	검사대상폐기물	07:30~16:00	시료검사대상폐기물, 고형화오니,연탄재	
토요일 (첫째,셋째)	06:00~12: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반 입 폐 지		
	07:00~12:00	건설, 사업장일반			
	08:00~12:00	고형화오니			

※ 다만, 규정 제4조에 따라 연휴기간(3일 초과)에는 사장이 별도로 추가반입 결정가능

2) 위반사항 조치기준(**관련규정 : 제10조 별표5 개정, '11.10.31일 시행**)

구분	현 행		개 선		
	위반내용	제재사항	위반내용		제재사항
주요 내용	침출수 누출	벌점3점	침출수 누출 또는 누수방지장치불량		벌점10점
	폐기물비산 또는 덮개불량	벌점3점	폐기물 비산 또는 밀폐형 덮개불량		벌점10점
	차량도색 또는 문구표시 부적정	벌점2점	차량도색 또는 문구표시 부적정		벌점6점
	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	벌점2점	세륜·세차 미실시 또는 차량청결상태 불량		벌점6점
	<신 설>		악취가 심한 폐기물 반입시	하역 검사시	벌점10점 및 반출
				계량대 통과전	반입금지

마. 폐기물 반입차량 등록업무 개선

❍ 주요개정내용(**관련규정 : 제7조·제8조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1.11.21일 시행**)

구 분	현 행	개 선
대상차량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위한 모든 폐기물차량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위한 모든 폐기물차량
폐기물종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허용된 폐기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허용된 폐기물
구비서류	- 폐기물 운반차량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 계량카드예치금 납입고지서	- 폐기물 운반차량등록신청서(직인 필) - 자동차등록원부(갑) (영업용 차량번호일 경우는 말소사항 포함) - 차량용 단말기 납입고지서
등록절차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소 등의 공식문서에 의하여 등록신청	공식문서가 아닌 웹(web)상으로 등록신청
직권말소	신 설	- 차량등록 후 3개월 이내 차량용 단말기 미 수령시 - 최근 1년간 폐기물 미 반입시 - 기타 필요한 경우
보증금	RF카드 32,000원 (환급요청시 환불)	차량용 단말기(약 20만원) (향후('11.11월 이전) 보증금 기준 등 운영방안 수립예정)
폐기물차량 운반증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모든차량은 차량등록 완료 후 출입증 교부	폐 지

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기준 강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대부분 가연성폐기물로 폐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 주요개선계획(**별도 안내문서 통지, '12.1.1일 시행**)

구 분	현 행	개 선
반입대상 폐기물	배출신고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 ※ 수해 또는 화재로 발생한 긴급폐기물은 제외
유예기간	'2011. 12. 31일까지	'2012.1.1일부터 가연성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반입금지(관련 해당차량등록 직권말소) ※ 불연성폐기물 이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 추가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반입여부 결정토록 운영 예정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제도 개정에 대한 건의의견

개정내용	수정 건의(안)	사 유

2011. 11. .

업 체 명 :

담 당 자 :

대표이사 : (인)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귀중